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- 변경 시행일: 2025년 07월 10일 (목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: 부분인출 서비스 추가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~ 제4조 <생략>	제1조 ~ 제4조 <좌동>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<생략> 4.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(일시 납입 기간)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. <생략>	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<좌동> 4.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(일시 납입으로 선택한 기간)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. <좌동>	
제6조 ~ 제7조 <생략>	제6조 ~ 제7조 <좌동>	
제8조 세율의 적용 1~2. <생략> ① <생략> ②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(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합니다)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	제8조 세율의 적용 1~2. <좌동> ① <좌동> ②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(제9조에 따라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와 가입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<생략>	<좌동>	
제9조 ~ 제10조 <생략>	제9조 ~ 제10조 <좌동>	
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<생략> 2.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,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.	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<좌동> 2.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가입일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심사일 현재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소득 기준을 준용하며,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.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제12조 <생략>	제12조 <좌동>	
<신설>	제13조 부분인출 1.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적립 금액의 40%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. 2. 부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, 그 이자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 3. 이 적금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인출이 불가합니다. 4.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	

<u>제13조 기타</u> 1. <u>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</u> 2. <u>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</u> 3. <생략> 4. <u>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 부칙 <생략> <신설>	<u>하는 때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</u> 5. <u>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정부기여금의 60%를 이 적금을 해지하는 때에 지급합니다.</u> <u>제14조 기타</u> 1. <u>이 적금은 일부해지(제13조에 따른 부분인출은 제외한다)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</u> 2. <u>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</u> 3. <좌동> 4. <u>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 부칙 <좌동> <u>이 특약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.</u>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부칙 추가
--	---	--